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9일, 김남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남희의원)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

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밀접한 식품 등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 광고의 범위에 AI 생성 결과물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2건의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 김남희의원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

- 한지아의원안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

현 행	김남희의원안	한지아의원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 략)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현행과 같음)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8조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1]으로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2], 부당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3]

- 아울러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현행법 제26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p.16

금에 처하도록 하며(현행법 제27조), 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허가(등록)취소,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4].

□ 2건의 개정안은 현행 표시·광고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AI 생성 결과물이 현행 부당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비추어 볼 때, 2건의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전문가'가 식품등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한 광고나 섭취 전·후 신체 변화 설명 과정에서 섭취 후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형태의 광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2건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2건의 개정안은 제8조제1항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AI 이용 결과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에서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광고의 정의는 AI 활용 등 광고의 생성 방식이 아니라, 매체와 표현 수단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라디오·텔레비전 등 매체를 통해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광고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둘째, 김남희의원안은 안 제8조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AI로 생성된 결과물을 '광고'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AI를 활용한 가상의 전문가 광고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지아의원안은 안 제8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신설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AI를 활용한 가상의 전문가 광고나 섭취 전·후 신체 변화 설명 과정

에서 섭취 후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표시 또는 광고를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 방식은 규제하려는 대상 행위가 조문상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제8조제1항 각호의 부당 표시·광고 유형과 결합하여 해석하여야만 그 취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 특히 김남희의원안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전체에 적용되는 광고에, 한지아의원안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적용되는 표시 또는 광고에 각각 AI 이용 결과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제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광고의 유형별로 AI와 관련된 어떠한 표현이나 방식이 금지되는 것인지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제8조제1항제9호는 총리령[5]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이며, 같은 항 제10호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인바[6], 제9호의 경우에는 AI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

이용 결과물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제10호의 경우에는 AI 이용 결과물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AI 생성 가상 전문가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광고 유형을 특정하여 규제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섭취 전·후 신체 변화 설명 과정에서 섭취 후 부분을 합성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의 경우, AI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며[7], 현행 시행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바[8], AI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4. 거짓·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광고

□ 한편, 금지 광고의 유형 중 하나로 AI 생성 가상의 전문가 광고를 추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9].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근 AI로 생성된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광고에 AI를 활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 중소벤처기업부:

- 김남희의원안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유사하게 만든 결과물을 일괄적으로 '거짓·과장광고'로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식품산업협회:

- 김남희의원안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의 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641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676호)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또한, 기존 부당광고 규제 체계 내에서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강화, 법 해석상 혼란 해소, 규제기준 명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현행법은 이미 거짓·과장 광고(제8조제1항제4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제8조제1항제5호)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즉, ‘AI 생성 가상의 전문가 추천 광고’는 그 매체가 AI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면 제8조 위반으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또한, 현행법은 광고·표시의 내용에 대하여 광고주 측에 실증(근거자료)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AI 가상의 전문가를 통한 추천 역시 제9조의 실증의무를 통해 법령위반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 개정안이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부당광고 규정 및 관련 법체계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영역으로, 별도의 규정을 추가할 경우 법체계상 중복 규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술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 ‘AI 사용 여부에 대

한 사전 검수 및 입증' 부담을 광고를 매개·배포하는 플랫폼에까지 전가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 플랫폼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준수 의무를 부과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딥페이크 등 AI 생성 결과물에 대하여 투명성 중심의 표시·고지 의무를 핵심 규율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율 방향과도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달리 집행 과정에서 혼선과 과잉 규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